

철도안전보건관리 규정

제정 2014.06.09. 규정 제133호

개정 2014.12.29. 제2014-14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철도안전을 유지·증진하고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한다)를 예방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에 대한 관련법령과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규정은 우리공사의 임직원과 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철도차량의 운전, 시설의 건설 및 보수, 차량의 검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공사의 운영구간을 운행하는 열차 또는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철도안전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의된 용어를 우선 사용하며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 외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가 철도를 운영하거나 철도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 시설, 장비, 운영절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열차운행체계 및 유지관리체계로 구성된다.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Safety Management System)”이란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사전적, 예방적인 철도안전관리 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의 조직구조, 역할과 책임, 절차, 준비, 관리, 경영 및 규정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나. “열차운행체계”란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열차운행 조직·인력, 열차운행 방법·절차·계획, 승무 및 직무, 철도관제, 철도보호, 질서유지 및 운영기록 등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다. “유지관리체계”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철도차량, 노반, 궤도, 건축, 전철전력, 신호, 통신 분야의 점검, 보수, 교체 및 개량 등 유지관리에 대한 유기적인 체계를 말한다.

2.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이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의 조건을 만족하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3. “열차운행 프로그램”이란 열차운행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 차량 및 열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4. “유지관리 프로그램”이란 유지관리체계의 조건을 만족하는 철도 차량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활동 및 절차 등을 기술한 문서를 말한다.
5.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란 공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본부장을 말한다.
6. “안전업무수행자”란 철도종사자와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본사 및 소속기관의 철도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기타 공사가 안전 관리에 필요하다고 결정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가. 유지관리 총괄 책임자 : 기술본부장

나.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 : 차량기술단장, 시설기술단장, 전기 기술단장

다. 주관부서장 : 본사에서 유지관리 분야별 책임자를 보좌하여 분야별 업무를 관리하는 처장

라. 안전관리 책임자 : 소속기관(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에서 관할 소속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자로서 지역본부장 및 부속기관의 장

마. 안전처장 : 지역본부에서 안전관리 책임자를 보좌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의 장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조치 및 신속한 대처로 예방한 사례
라. 기타 안전을 저해하는 모든 사항 및 조언 등

11. “재난”이란 폭풍, 폭우,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12. “안전시설”이란 승강장의 안전시설, 철도교량의 안전시설, 차량 탈선방지 안전시설, 선로의 안전시설,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13.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이란 철도안전법 제5조의 철도안전종합 계획의 단계적 시행에 필요한 공사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말한다.
14. “안전경영시스템”이란 안전·조사·산업안전보건업무를 지원하는 전산시스템(KOVIS)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12.29>

제4조(준수의무) ① 공사의 직원은 이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에 관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모든 사규 및 매뉴얼 제·개정과 업무 절차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함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철도사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지원, 제도마련 등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사장은 「철도안전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변경 및 유지를 위해 조직 및

인력을 갖추고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철도안전보건관리 기본체계는 별표 1과 같다.

③ 각 본부·실·단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를 사규 및 방침 등 운영 절차에 반영하여 안전에 대한 지침을 전달하는 핵심수단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본부·실·단장은 안전보건관리 부서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관 업무분야의 철도안전관련 제도개선 및 대책 수립·관리
2. 소관 업무분야의 철도사고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관리
3. 철도안전에 소요되는 인원·예산의 확보 및 사업 추진
4.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작성
 - 가.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프로그램
 -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 개요
 - 2) 철도안전경영
 - 3) 문서화
 - 4) 위험관리
 - 5) 요구사항 준수
 - 6) 사고조사 및 보고
 - 7) 내부점검
 - 8) 비상대응

- 9) 교육훈련
- 10) 안전정보
- 11) 안전문화

나. 열차운행프로그램

- 1) 철도운영 개요
- 2) 철도사업면허
- 3) 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 4) 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 5) 열차운행계획
- 6) 승무 및 역무
- 7) 철도관제
- 8)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 9) 열차운행 기록관리
- 10)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다. 유지관리프로그램

- 1) 유지관리 개요
- 2) 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 3) 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 4) 유지관리 이행계획
- 5) 유지관리 기록
- 6) 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 7) 철도차량 제작 감독
 - 8) 위탁계약자 감독 등 위탁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소관업무의 철도안전에 관한 사항
- ⑤ 철도안전관리체계 프로그램 작성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 1. 철도안전관리시스템(SMS) : 안전본부
 - 2. 열차운행 : 운전기술단 <개정 2014.12.29>
 - 3. 유지관리 : 차량기술단, 시설기술단, 전기기술단 <개정 2014.12.29>

제2장 철도안전관리체계

제1절 철도안전보건경영

제6조(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 ① 사장은 철도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기본으로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을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안전보건경영 등의 검토) ① 사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적정성, 충족성 및 효과성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안전보건경영 등의 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철도안전보건경영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목표) ① 사장은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1. 국가정책 및 철도안전보건경영방침에 부합하는 목표
2. 철도사고 등의 분석과 안전관리활동 평가를 통한 정량적 목표

② 안전본부장은 안전목표 수립에 필요한 기준 또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내부 요구사항 및 위험도
2. 기술, 재정, 운영 사항 및 이해관계자의 견해

③ 각 본부·실·단장은 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업무절차 마련 등 관련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계획) ① 사장은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종합적인 안전계획(이하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 관리하여야 하며 계획된 주기에 의해 검토, 조정 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종합계획을 기준으로 다음연도의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종합시행계획 수립, 변경 및 추진실적 관리에 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소속 실정에 맞는 철도안전종합세부시행계획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역할과 책임) ① 사장은 안전경영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철도안전업무를 총괄하여 다음사항을 책임지며 안전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철도안전심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2.29.>

1.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계획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필수적인 자원의 가용성 보장 <신설 2014.12.29.>

가. 안전경영방침 설정, 승인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원 제공 <신설 2014.12.29.>

나. 자원은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 및 공사의 기반구조(조직)을 포함 <신설 2014.12.29.>

2. 철도안전관리체계 책임자의 지정 <신설 2014.12.29.>

3. 역할과 책임의 분담 <신설 2014.12.29.>

가. 안전관리 업무 및 활동 등에 대한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나. 적정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분담된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 위임

다.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이 역할, 책임 및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역량 및 적정 자원의 확보

라.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의 안전 직무가 적절히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이를 관리하기 위한 성과의 정기적인 검토

② 철도안전관리체계 이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역할, 책임 및 의무의 분담, 권한의 위임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4.12.29.>

1.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 공사의 안전관리체계 책임자는 안전본부장으로서 사장을 보좌하여 안전경영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수립, 승인, 실행 및 유지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관리하며 효과적인 안전경영 촉진을 위한 역할, 책임, 의무분담 및 권한 위임 등을 종합·조정하고 철도안전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리 <신설 2014.12.29.>
2. 주관부서장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와 함께 공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실행 및 유지에 관하여 분야별 업무를 지휘·관리 <신설 2014.12.29.>
3. 안전관리 책임자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주관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에서 안전업무를 총괄하여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실행되도록 관리 <신설 2014.12.29.>
4. 안전처장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지역본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업무를 관리 <신설 2014.12.29.>
5. 현업부서장 : 안전관리체계 책임자,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처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업무범위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가 실행되도록 관리 <신설 2014.12.29.>
6. 안전담당자 : 본사, 지역본부 및 부속기관에서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의 실무를 담당 <신설 2014.12.29.>
7. 관리감독자 :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처장 및 안전담당 부서장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서 소속 직원을 감독하여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시행 <신설 2014.12.29.>

③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본부장이 시행하는 안전경영 및 철도안전관리체계와 관련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음의 역할과 책임을 갖는다.

1. 철도안전관리체계 수립, 실행, 유지

가. 철도안전관리체계 : 안전본부장을 중심으로 한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

나. 열차운행 : 여객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물류본부장, 운전기술단장, 관제실장 <개정 2014.12.29>

다. 유지관리 : 기술본부장, 차량기술단장,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개정 2014.12.29>

2. 철도안전관리체계 성과의 보고

3. 외부기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및 협의

4.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지속적 개선 등

④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철도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안전법령의 준수와 안전보건관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안전담당자를 지정·운영하는 등 역량 있는 인적자원을 확보하고 역할, 책임 및 의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한 협의,

조정, 심의를 위하여 매월 안전전략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 ⑥ 사장은 공사의 안전관련 역할과 책임을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연 1회 이상 검토한다. <신설 2014.12.29>

제2절 문서화

제11조(문서화 대상) 사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문서화하여야 하며 문서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목표, 운영절차(사규 및 매뉴얼 등)
2. 위험관리절차, 위험도 평가, 변경관리절차
3. 사고 및 장애 조사절차, 조사결과
4. 안전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와 결과
5. 비상대응계획, 비상대응훈련계획 및 결과
6. 교육계획
7. 안전정보 및 안전문화
8.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
9.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유지 관련 사항

제12조(문서관리 절차) ① 문서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은 「문서관리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규는 「사규관리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규범은 따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안전본부장은 「문서관리 규정」 및 「사규관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관리 대상) ① 사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관리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사규, 매뉴얼
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산업재해 발생 및 예방관리,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등)
3.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안전계획/실적관리, 위험도분석, 안전점검/활동관리, 안전심사/평가관리, 안전정보관리)
4. 안전조사에 관한 사항(사고조사/통계관리, 예방대책/실적관리)
5.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② 기록관리 대상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4호는 안전경영시스템(KOVIS)에 기록한다.

제14조(기록관리 절차) ① 기록관리의 일반적인 사항은 「기록물관리 규정」에 따른다.

② 안전본부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관리 하도록 하여야 하며 코레일 그룹포털 및 안전경영시스템(KOVIS) 등에 의해 전산화 한다.

③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안전경영시스템(KOVIS) 기록대상의 발생, 변경 시 그 사항을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3절 위험관리

제15조(위험도 평가 및 관리) ① 사장은 위험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위험관리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관리 절차에 따라 위험요인 도출, 위험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등의 관리를 실행하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과 철도시설 업무는 설계단계에서 위험도 평가를 시행하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대책) ① 사장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관리를 통해 제시된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관리함으로써 철도사고 등의 예방활동에 활용되도록 하고 이를 안전본부장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술본부장은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설계단계에서 시행한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통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안전본부장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안전대책이 적정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보완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대책 이행에

다른 위험도가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제17조(변경관리) ① 사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내·외부 변화에 따른 변경관리 하여야 하며 관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 조직 기능의 변화
2. 업무규모 또는 운영방식의 중대한 변화
3. 재무악화 및 노사관계 등 변화
4. 외부위탁 계약 환경의 변화
5. 새로운 장비 도입 등 운영환경의 변화
6. 그 밖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변화 등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변경요인, 필요성, 위험평가, 안전대책에 대한 사항을 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본부장은 변경관리 사항에 대하여 시행 전 적정성을 확인하고 시행 후 관리가 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절 요구사항 준수

제18조(요구사항 파악) ① 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법령, 기술기준 및 규격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경영지원본부장은 국가 법령, 기준에 의한 요구사항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항상 최신의 것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철도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반영되도록 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요구사항 변경관리) ① 안전본부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현재 운영절차가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운영절차 변경 등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요구사항 준수) ① 안전본부장은 철도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요구사항이 준수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요구사항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업무절차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절 사고조사 및 보고

제21조(사고 및 장애 보고) ① 사장은 사고 및 장애에 대한 보고 절차를 수립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다음에 해당하는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단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의 사상자,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③ 안전본부장은 제2항 외 철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다음 각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초기보고 : 사고발생현황 등
2. 중간보고 : 사고수습·복구상황 등
3. 종결보고 : 사고수습·복구결과 등

④ 여객본부장은 여객사상사고 등의 보고·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⑤ 사고 및 장애를 제외한 기타 위험사건에 대하여 보고체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29.>

1. 기타 위험사건의 보고체계 <신설 2014.12.29.>

가. 준사고 사례 : 그룹포털-코레일 안전마당 및 KOVIS 안전 경영시스템 등재

나. 그 외의 사례 : 그룹포털-XROIS 등재

2. 기타 위험사건의 보고내용 <신설 2014.12.29.>

가. 제목 : 준사고 및 그 외의 사례를 함축적으로 표현

나. 개황 : 6하 원칙에 따라 상황을 설명

다. 조치사항 : 원인의 분석 및 조치한 내용을 기술

라. 조치결과 : 조치에 따른 효과 기술

마. 관련자료 : 사진, 도면 등

제22조(사고 및 장애 조사) ① 사장은 사고 및 장애를 조사, 분석, 기록하는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철도사고 등의 발생 원인이 위규취급으로 판명된 경우와 복구·수습처리가 적정하지 못하여 복구지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소속, 소속기관의 장, 감독책임자 또는 직원에 대하여 문책할 수 있다.

③ 안전본부장은 철도사고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그 피해액을 구상할 수 있다.

④ 안전본부장은 철도사고 등의 원인과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본사와 지역본부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한다.

제23조(재발방지대책) ① 안전본부장은 사고 및 장애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재발방지대책을 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절 내부점검

제24조(안전심사) 사장은 철도안전관리체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점검 및 모니터링) ① 사장은 안전관리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점검 및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에 협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심사, 점검 및 결과의 관리) ① 사장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심사, 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조치요구를 받은 소속은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안전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절 비상대응

제27조(비상대응계획의 수립) ① 사장은 비상상황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계획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사이버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 관리한다.

③ 안전본부장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비상대비, 비상대응, 비상복구 등에 대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비상대응훈련) ① 사장은 비상상황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응훈련 계획을 수립, 관리한다.

② 사장은 당해년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절 교육훈련

제29조(인적자원관리) ① 사장은 철도의 운영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인적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안전업무수행자 양성 등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사항을 인사노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본부·실·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업무를 위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 확보 및 철도안전업무수행자 양성을 위한 기준과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교육훈련) ① 안전본부장은 철도안전업무수행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인사노무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 재난안전 및 철도안전업무수행자 등이 직무역량 향상 및 안전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인사노무실장 및 인재개발원장은 직원의 직무역량 향상과 철도 안전을 위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철도안전·보건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에 대하여 철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철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철도안전·보건교육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분기 6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 안전보건법령에 의해 따로 정한 대상은 관련세칙에 의한다.

제9절 안전정보

제32조(안전정보 관리) ① 사장은 안전업무와 관련된 안전정보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은 안전정보를 최신의 것으로 유지, 제공하기 위한 담당자 지정 등의 업무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정보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철도운영 등의 기록
2. 법령 및 사규, 매뉴얼
3. 사고사례, 취약개소, 운행선로 정보, 철도시설현황

4. 간행물 등

④ 안전본부장은 다음 상황별로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1. 평상시 및 비상시

2. 부재중인 사람

3. 안전정보 시스템의 오류 등 고장 발생 시

제33조(위험보장)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원, 고객, 일반인 등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사항을 안전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절 안전문화 증진

제34조(안전 지도력) 사장은 직원의 안전문화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제약요인을 개선하는 등 안전문화를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제35조(안전문화 증진) ① 안전본부장은 안전문화 수준 측정 및 향상을 위한 업무절차를 수립,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업무 시작 전 별표 3의 안전실천 결의를 제창하도록 하고 현장의 안전사고 감소를 위해 직원, 계약자 및 이해관계자는 지적확인 환호응답을

생활화 하도록 한다.

③ 안전본부장은 철도사고예방과 안전관리 향상 등에 공적이 있는 직원에 대하여 그 업적을 기리고 전 직원이 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업무절차를 마련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철도무사고관리) 안전본부장은 직원으로 하여금 스스로 책임 사고 예방과 인적오류 방지에 힘쓰도록 철도무사고 목표량을 부여 하고 그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는 무사고 실적관리에 대한 기준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운행안전관리

제37조(열차운행체계) 사장은 열차운행을 위한 사업면허 취득, 조직·인력관리, 운행방법·절차, 열차운행계획, 승무·역무, 철도관제, 철도 보호·질서유지, 열차운행 기록관리 등을 포함한 한 열차운행체계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열차운행 조직 및 인력) ① 사장은 열차운행체계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책임자를 둔다.

1. 일반, 고속열차 : 여객본부장
2. 광역철도 : 광역철도본부장
3. 화물열차 : 물류본부장

4. 열차계획 : 운전기술단장 <개정 2014.12.29.>

5. 철도관제 : 관제실장 <개정 2014.12.29>

② 여객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물류본부장, 운전기술단장, 관제실장은 열차운행을 위한 다음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절차를 수립, 관리하고 열차운행 인력을 지도 및 감독하는 조직

2. 열차운행 대상, 여객·화물 규모, 업무·근무형태에 따른 인력

③ 인사노무실장은 열차운행 인력에 대하여 요구되는 면허, 직무수행 요건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인력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본부장은 철도종사자의 인적오류, 음주, 약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 및 확인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열차운행 방법 및 절차) ① 사장은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방법 및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기술단장은 열차운행에 대한 다음사항의 기준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열차운전 절차

2. 운행선 및 인접 작업 또는 공사에 대한 승인 절차

③ 운전기술단장 및 기술본부장(전기기술단장)은 열차를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다음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1. 폐색방식

2. 철도신호

④ 안전본부장은 철도차량, 철도시설에 대한 중대고장 또는 열차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한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방호방식, 분야별 조치사항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여객본부장 및 광역철도본부장은 사고 및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승객대피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⑥ 물류본부장은 화물 운송에 따른 적재제한, 특대화물 운송, 위험물 운송 및 취급관리, 위험물 운송용기 검사관리 등의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열차운행계획) 운전기술단장은 열차안전운행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구간(기점, 종점, 정차역) 및 시간계획, 운행차량, 운행횟수 및 선로용량 사용계획, 철도서비스 종류(여객운송·화물운송 등)를 포함한 열차운행계획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1조(승무 및 역무) 여객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및 물류본부장은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다음의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1. 운전 및 승무 업무종사자의 운영 및 관리
2. 여객 및 화물 취급 역의 운영 및 관리

제42조(철도관제) ① 안전본부장(관제실장)은 철도차량 및 열차의 운행제어, 통제, 감시를 위해 운행기준, 방법, 절차 및 순서를 정한 관

제업무와 이례사항에 대비하기 위한 관제지원 업무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② 철도관제의 업무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운행정보의 제공 및 공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운행의 일시중지
3. 운행선 작업 또는 공사

제43조(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사장은 철도차량운전업무 종사자에 대한 다음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의 필요요건
2.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3. 관제업무수행의 필요요건
4. 철도운행관련종사자의 필요요건
5. 검사에 불합격한 자에 대한 관리
6. 적성검사 신청의 제한
7. 안전교육

제44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철도안전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이하 “철도보호지구”라 한다)에서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저해행위 등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지장시설·설비의

철거, 안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여객본부장 및 광역철도본부장은 여객안전을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객열차 안에서의 금지행위
2. 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3. 금지행위 위반자 및 물건에 대한 퇴거조치 등

제45조(철도운행 안전관리) 안전본부장은 철도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철도사고 등을 예방하고 여객과 화물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다음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지적확인 환호응답
2. 음주 또는 약물복용 금지
3. 중점대상자 관리
4. 승무원 안전관리
 - 가. 승무적합성 검사
 - 나. 승무원의 무선교신 및 운전보안장치 기능 확보
 - 다. 출무통보책임자 지정 및 휴대전화 사용금지
 - 라. 운전면허 취득자에 대한 실무수습

제46조(열차운행 기록관리) 여객본부장, 광역철도본부장, 물류본부장, 운전기술단장, 관제실장은 운전, 관제, 승무, 역무 등 각 분야별 열차운행 기록을 관리 및 보존하는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7조(계약자 관리) ① 재무관리실장은 열차운행과 관련된 업무를 계약한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라 한다)가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본부·실·단장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열차운행의 역할과 책임
2. 해당 열차운행의 수행능력
3.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자격을 갖춘 인력
4. 해당 열차운행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② 각 본부·실·단장은 계약자의 관리를 위한 다음의 절차를 마련하여 재무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열차운행이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되기 위한 절차
2. 열차운행 업무의 수행, 열차운행 기록의 유지,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

제4장 유지관리

제48조(유지관리체계) 사장은 유지관리에 대한 조직 및 인력, 방법 및 절차, 이행계획, 기록, 설비 및 장비, 부품, 철도차량 제작감독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체계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유지관리 조직 및 인력) ① 사장은 유지관리체계 이행을 위하여 기술본부장을 총괄책임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분야별 책임자를 둔다.

1. 차량분야 : 차량기술단장
2. 시설분야 : 시설기술단장
3. 전기분야 : 전기기술단장

② 기술본부장(차량·시설·전기기술단장)은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유지관리 절차의 수립, 관리에 관한 업무
2. 유지관리 인력의 지도, 감독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3. 유지관리 대상, 종류 및 주기,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에 관한 업무
4. 유지관리 인력의 적격성 기준 및 확인 절차

제50조(유지관리 방법 및 절차) ① 기술본부장(차량·시설·전기기술단장)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철도차량 형식승인, 완성검사, 철도용품 형식승인 및 노후 철도차량 관리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광역철도본부장, 물류본부장, 기술본부장(차량기술단장)은 철도차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한 기준 및 절차
2. 사고·노후 철도차량의 유지관리 기준

3. 철도차량의 견인 및 주행성능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후 시행하는 시험운전 범위, 방법

③ 기술본부장(시설·전기기술단장)은 철도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적합하도록 점검 유지관리
2. 점검 및 유지관리 실적의 기록·보존
3. 철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시설을 개선 또는 개량
4. 유지보수장비 현대화
5. 각 시설별 관리기준, 점검항목·주기 및 방법 관리

제51조(유지관리 이행계획의 수립) 기술본부장(차량·시설·전기기술단장)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에 대한 점검, 보수, 교체 및 개량 등에 대한 유지관리 대상, 방법, 인력 및 주기 등을 포함한 유지관리 이행 계획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52조(유지관리 기록관리) 기술본부장(차량·시설·전기기술단장)은 유지관리 대상, 내용, 인원, 주기 및 결과 등에 대한 기록관리, 결과의 활용 및 보존하는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53조(유지관리 설비 및 장비) 기술본부장(차량·시설·전기기술단장)은 유지관리를 위한 설비 및 장비를 확보하고 교체계획을 포함한 관리 절차 및 시험·검사와 측정 장비의 검교정에 대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54조(유지관리 부품) 기술본부장(차량·시설·전기기술단장)은 유지

관리 부품의 확보 및 품질확보를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55조(철도차량 제작감독) 차량기술단장은 철도차량의 제작과 관련하여 제작감독 업무, 전문기관 선정, 제작자의 시행조치 및 지속적인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종합시험운행 등) 철도안전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 시설관리자 주관으로 사전점검 및 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함에 있어 합동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 사전점검 : 안전본부장
2. 시설물검증시험 : 운전기술단장 <개정 2014.12.29>
3. 영업시운전 : 각 본부·단장

제57조(계약자 관리) ① 재무관리실장은 유지보수 계약자가 위험관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자 선정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각 본부·실·단장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유지관리의 역할과 책임
2. 해당 유지관리의 수행능력
3.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구성 및 자격을 갖춘 인력
4. 해당 유지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설비 및 장비, 기술자료 등

② 각 본부·실·단장은 계약자의 관리를 위한 다음의 절차를 마련

하여 재무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유지관리가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시정조치가 적기에 시행되기 위한 절차
2.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 유지관리 기록의 유지, 차량 고장과 시설물 손상 발견 및 적기 시정조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

제5장 산업안전보건

제58조(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① 사장은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 시책을 준수하고 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산업안전 및 보건의 준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59조(산업안전보건교육) 안전본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신규 채용·작업변경·정기·특별·직무)을 시행하는 계획을 수립·관리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0조(산업안전관리) ① 안전본부장은 철도현장에서 산업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작업계획서의 작성
2. 위험성 평가 시행
3. 열차 운행선 작업 및 점검 시 안전조치
4. 철도시설물 순회점검 시 안전조치
5. 산업재해 예상 시 안전조치
6. 기타 산업안전관리에 대한 사항

② 안전본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표지의 설치
2.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3. 안전수칙의 수립 및 준수
4. 교통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관리
5. 비상조치(중대재해, 화재폭발 등)에 대한 사항

③ 차량기술단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산업보건관리) ① 안전본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산업보건 관리 업무를 위한 다음사항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
2. 건강진단
3. 물질안전보건
4. 근골격계 질환예방

5. 정신건강유지 및 증진

6. 기타 산업보건관리에 대한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직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산업재해 보고 및 처리) ① 안전본부장은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보고와 조치에 대한 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재해발생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관리하여야 한다.

③ 안전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사상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조짐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업무절차를 수립,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문책할 수 있다.

제63조(무재해운동) 안전본부장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추진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무재해목표 달성 기준

2. 유공직원에 대한 포상 기준

제6장 재난 및 소방 등

제1절 재난안전관리

제64조(재난안전관리 시행계획) 사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집행계획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본부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65조(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 안전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은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 관리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지정대상을 확인, 조사하여야 한다.

제66조(재난안전분야 종사자 교육) 안전본부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노무실장과 협의하여 전문교육 기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7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① 사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및 자재를 비축관리 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응급조치에 사용할 장비와 인력을 다음기준에 의해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본부장은 이를
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1일 열차 운행률 30퍼센트 이상 유지
2. 1일 지하철 운행률 40퍼센트 이상 유지

제68조(위기관리 매뉴얼) ① 안전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유형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관리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각 본부·실·단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9조(재난대비훈련) 안전본부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지자체, 군부대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시행하는 재난대비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0조(재해우려 및 악천후 시 대비) 안전본부장은 재해우려 및 악천후 시 철도차량 운행 및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사항에 대한 기준을 수립, 실행, 유지하여야 한다.

1. 안전확보 긴급명령
2. 철도기상특보
3. 재해우려 및 악천후 대비

제2절 소방안전관리

제71조(소방 및 방화관리) ① 인사노무실장은 본사 사옥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은 역·사업소를 포함한 소속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 및 방화관리 계획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본부장은 소방 및 방화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수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포상 및 벌칙

제72조(모범사례 포상) 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 안전본부장의 추천을 받아 포상할 수 있다.

1. 교통안전의 달 행사관련 유공
2. 안전심사 결과 우수 또는 유공
3. 안전점검 결과 우수 또는 유공
4. 안전지도사 활동결과 유공
5. 철도무사고목표량 달성
6. 무재해운동 목표달성
7. 기타 철도사고예방 및 철도안전관리에 관한 유공

제73조(벌칙) ① 사장은 문책대상 소속 또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적용한다.

1. 징계
2. 경고
3. 주의
4. 시정조치

② 피해규모, 사회적 파장 및 원인 경중 등에 따른 문책의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부칙 <규정 제133호, 2014.06.09.>

- ① 이 규정은 2014년 0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전 까지 ‘철도 안전관리규정’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철도안전관리규정’과 경합되는 내용은 ‘철도안전관리규정’에 따른다.
- ③ ‘철도안전관리규정’은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후 폐지한다.

부칙 <제2014-141호, 2014.12.2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철도안전보건관리 조직체계

(제5조 관련)



단, 부속기관 중 연구원, 정보기술단, 회계통합센터, 인재개발원, 철도교통관제센터, 특별동차운영단은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제외

[별표 2]

교육대상자별 안전교육내용

(제31조 관련)

1. 소속기관의 직원(매분기 6시간 이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철도안전법령 및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철도사고사례 및 사고예방대책•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 비상시 응급조치 및 대책• 안전관리의 중요성 등 정신교육•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	강의 및 실습

2. 제외대상 : 연구원, 정보기술단, 회계통합센터, 인재개발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안전보건교육의 면제)

3.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사무실 직원, 관리감독자

[별표 3]

안전실천 결의

(제35조 관련)

안전실천 결의

**안전은 철도의 핵심가치이자 최우선 목표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우리는 규정과 수칙을 반드시 지킨다.

우리는 확인과 협의를 철저히 한다.

우리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한다.

[별표 4]

안전관련법령에서 정의한 용어의 정의

(제3조 관련)

용어	내용	구분
국가재난관리기준	"국가재난관리기준"이란 모든 유형의 재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의 전 과정을 통일적으로 단순화·체계화한 것으로서 안전행정부장관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속철도	"고속철도"란 열차가 주요 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으로 주행하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하는 철도를 말한다.	철도건설법
공익서비스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구내운전	"구내운전"이라 함은 정거장내 또는 차량기지 내에서 입환신호에 의하여 열차 또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긴급구조	"긴급구조"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이 하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모든 긴급한 조치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방재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말한다. 다만,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긴급구조지원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이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운영체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유한 기관이나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로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대표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건널목보안장치	"건널목보안장치"란 도로와 철도가 평면교차하는 건널목에 열차, 자동차 및 사람 등의 통행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각종 보안설비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건축한계	"건축한계"란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기지	"기지"란 화물의 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 차량기지, 주차기지(駐泊基地), 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광역철도	"광역철도"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건설법
궤간	"궤간"이란 양쪽 레일 안쪽 간의 거리 중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하며,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철도건설규칙
궤도	"궤도"란 레일·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궤도회로	"궤도회로"란 열차 등의 궤도점유 유무를 감지하기 위하여 전기적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도상	"도상"이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 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도시교통권역	"도시교통권역"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운영하는 철도·모노레일·노면전차·선형유도전동기·자기부상열차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도시철도법
도시철도건설	"도시철도건설"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	도시철도법

용어	내용	구분
	도시철도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도시철도 건설자	"도시철도건설자"란 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사업	"도시철도사업"이란 도시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나. 도시철도시설을 이용한 여객 및 화물 운송 다. 도시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 관리 라. 도시철도시설·도시철도차량·도시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 개발 및 서비스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시설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도시철도법
도시철도 운영자	"도시철도운영자"란 제4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활동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사업을 하는 자로서 도시철도공사 및 제4조에 따라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도시철도에 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도시철도법
동력차	"동력차"라 함은 기관차(機關車), 전동차(電動車), 동차(動車) 등 동력발생장치에 의하여 선로를 이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조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무인운전	"무인운전"이란 사람이 열차 안에서 직접 운전하지 아니하고 관제실에서 원격조종에 따라 열차가 자동으로 운행되는 방식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본선	"본선"이라 함은 열차의 운전에 상용하는 선로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본선"이란 열차운행에 상용(常用)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사업용철도	"사업용철도"란 철도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사업주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선로	"선로"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선로"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路盤) 또는 인공구조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선로전환기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철도안전법시행령
	"선로전환기"란 차량 또는 열차 등의 운행 선로를 변경시키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설계속도	"설계속도"란 해당 선로를 설계할 때 기준이 되는 상한속도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소방대상물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소방기본법
신호기	"신호기"란 폐색구간(閉塞區間)의 경계지점 및 축선의 시점 등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열차운행의 가능 여부를 지시하는 신호기 및 표지	철도건설규칙

용어	내용	구분
	등의 장치를 말한다.	
신호소	"신호소"라 함은 상치신호기 등 열차제어시스템을 조작·취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신호소"란 열차의 교차 통행 및 대피를 위한 시설이 없이 열차의 운행에만 필요한 상치신호기(常置信號機)(열차제어시스템을 포함한다)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슬랙	"슬랙"(Slack)이란 차량이 곡선구간의 선로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 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안전관리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기준	"안전기준"이란 각종 시설 및 물질 등의 제작,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을 체계화한 것을 말하며, 안전기준의 분야,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문화활동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완급차	"완급차(緩急車)"라 함은 관통제동기용 제동통·압력계·차장변(車掌弁) 및 수(手)제동기를 장치한 차량으로서 열차승무원이 집무할 수 있는 차실이 설비된 객차 또는 화차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운행장애	"운행장애"란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철도사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위험물	"위험물"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일반철도	"일반철도"란 고속철도와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를 제외한 철도를 말한다.	철도건설법
입환	"입환(入換)"이라 함은 사람의 힘에 의하거나 동력차를 사용하여 차량을 이동·연결 또는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연동장치	"연동장치"란 신호기·선로전환기·궤도회로 등의 제어 또는 조작이 일정한 순서에 따라 연쇄적으로 동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열차	"열차"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철도운영자가 편성하여 열차번호를 부여한 철도차량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열차"라 함은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철도차량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열차"란 동력차에 객차 또는 화차 등을 연결하여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한 차량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열차제어시스템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운행을 직접적으로 제어하기 위하여 연동장치 및 열차자동제어장치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기동차전용선	"전기동차전용선"이란 도시교통 처리를 주목적으로 전기동차가 운행되는 선로로서 디젤기관 등에 의한 여객열차·화물열차는 운행되지 아니하는 선로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전용철도	"전용철도"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른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수요에 따라 특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철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전용철도"란 「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전용철도운영자	"전용철도운영자"란 제34조에 따라 전용철도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전차선로	"전차선로"라 함은 전차선 및 이를 지지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물로서 전선, 지지물(支持物)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용어	내용	구분
정거장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시행령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조성,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정거장"이란 여객 또는 화물의 취급을 위한 철도시설 등을 설치한 장소[조차장(열차의 조성 또는 차량의 입환(入換)을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및 신호장(열차의 교차 통행 또는 대피를 위하여 철도시설 등이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조차장	"조차장(操車場)"이라 함은 차량의 입환 또는 열차의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종곡선	"종곡선(縱曲線)"이란 차량이 선로 기울기의 변경지점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종단면에 두는 곡선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중대재해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진행지시신호	"진행지시신호"라 함은 진행신호·감속신호·주의신호·경계신호·유도신호 및 차내신호(정지신호를 제외한다) 등 차량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재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정부	"재난관리정보"란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난상황정보, 동원가능 자원정보, 시설물정보, 지리정보를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관리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나.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지부 등 지방조직을 포함한다)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차량	"차량"이라 함은 열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1량의 철도차량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차량"이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客車)·화차(貨車) 및 특수차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철도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철도건설법

용어	내용	구분
	"철도"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철도건설사업	"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철도의 건설, 기존 철도노선의 직선화·전철화 및 복선화, 철도차량기지의 건설과 철도역 시설의 신설·개량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철도건설법
철도망	"철도망"이란 철도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철도 교통망을 말한다.	철도건설법
철도사고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사업	"철도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차량을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철도사업법
철도사업자	"철도사업자"란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한다) 및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면허를 받은자를 말한다.	철도사업법
철도산업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사업법
	"철도시설"이란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시설관리자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 시설 및 역사(驛舍)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 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 보수기지, 차량 정비기지 및 차량 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 제어설비 라. 철도노선 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철도건설법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의 건설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신호	"철도신호"라 함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전호(傳號) 및 표지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용어	내용	구분
철도용품	"철도용품"이란 철도시설 및 철도차량 등에 사용되는 부품·기기·장치 등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운수 종사자	"철도운수종사자"란 철도운송과 관련하여 승무(승무, 동력차 운전과 열차 내 승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을 말한다.	철도사업법
철도운영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운영"이란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철도운영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운영 자	"철도운영자"란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종사 자	11.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운전업무종사자"라 한다) 나. 철도차량의 행을 집중 제어·통제·감시하는 업무(이하 "관제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사람 다. 여객에게 승무(乘務) 및 역무(驛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철도운영 및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 및 질서유지와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정비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철도차량	"철도차량"이란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철도안전법
	"철도차량"이란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을 말한다.	철도사업법
	"철도차량"이라 함은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제설차, 궤도시험차, 전기시험차, 사고구원차 그 밖에 특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춘 철도차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측선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측선"이란 본선 외의 선로를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칸트	"칸트"(Cant)란 차량이 곡선구간을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안쪽 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통신설비	"통신설비"란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에 관한 정보(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를 송수신하거나 표출하기 위한 통신선로 등의 통신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 등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폐색	"폐색"이라 함은 일정 구간에 동시에 2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 구간을 하나의 열차의 운전에만 점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
	"폐색구간"이란 선로를 여러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반드시 하나의 열차만 점유하도록 정한 구간을 말한다.	철도건설규칙
해외재난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재난으로서 정부차원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재난을 말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